**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자회사 포함)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등기임원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주관부서)**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인사관련 담당 부서로 한다

**제4조 (퇴직금 지급조건)**

1. 임원 개인별 퇴직연금 불입된 금액에 한해 실근무 종료일까지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2. 임원의 퇴직금은 재임기간 만 1년 이상의 임원이 해촉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3. 전항의 재임기간이라하면 위촉일로부터 해촉일까지의 기간의 실재임기간을 말한다

**제5조 (퇴직금 배수 적용)**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국내 보수월액의 총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1. 국내 보수월액은 기본연봉을 12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기준 월 보수액 상한선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2. 퇴직금 총 지급률은 재임기간별로 각각 계산한 율의 합을 말한다.
3. 재임기간별 퇴직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4. 회장, 사장 및 이에 준하는 자: 재임 1년당 2
5. 부사장 및 이에 준하는 자: 재임 1년당 1
6. 전무, 상무 및 이에 준하는 자: 재임 1년당 1
7. 이사 및 이에 준하는 자: 재임 1년당 1
8. 재임기간의 계산

재임기간의 계산에 있어 재임 연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1. 퇴직금 지급의 예외

서면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는 지급률을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 (퇴직금 지급제한)**

이사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특별위로금 지급)**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전체 퇴직금의 최대 100%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등기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급시기 및 방법)**

퇴직금, 특별위로금은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의 방법은 통화뿐만 아니라 예금 및 증권,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지급하는 금융상품 등의 평가는 퇴직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에 의한다

**제9조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